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89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김승원·박균택·서미화

박해철 • 이정문 • 이재강

한준호 • 권칠승 • 서영교

손명수 · 민병덕 · 장경태

정청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 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의 죄를 범한 자
-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u><단</u>	
<u>서 신설></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u> <신 설></u>	<u>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u>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의
	<u> 죄를 범한 자</u>
<u><신 설></u>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
	의 죄)의 죄를 범한 자